

8.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19년 2월 28일
- 발 의 자 : 김규학 의원, 김대현 의원, 김원규 의원, 박갑상 의원
이시복 의원, 이영애 의원
- 회부일자 : 2019년 3월 4일
- 상정일자 : 제26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2019년 3월 18일) 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규학 의원)

□ 제안이유

- 오늘날 각 지자체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지역사회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이른바 ‘넘비현상’이 팽배하고 있음에 따라, 대구시민들이 웰다잉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립공원묘지가 산재한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지천면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대구시의 화장시설 사용료에 대해 대구시 거주자요금을 적용시켜 지역주민들이 웰다잉할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지천면 소재지에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를 두고 사망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 시설 사용료는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자 요금을 적용한다.(안 제6조 제5항)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김창업)

□ 주요 검토사항

- 안 제6조제5항은 공설묘지와 봉안당 등 대구시의 장사시설이 소재한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지천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사망한 경우, 대구시 공설화장장(명복공원) 사용에 있어 경북지역 관외 사용료가 아닌 대구시 관내 사용료를 적용하려는 것임.

※ 해당지역 인구현황

(단위:명)

구 분	계	동명면	지천면
인구수	9,937	5,515	4,422
65세 이상	3,356	1,725	1,631

☞ 2018년 명복 화장장 이용현황 : 동명면 55명 / 지천면 58명

□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의 장사시설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많은 정신적 피해는 물론,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공설봉안당과 공설묘지 소재지 인근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포화상태에 이른 지역 공설화장장의 운영 등을 감안하여 여타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으며,
- 지역 장사시설의 수급여건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중·장기적인 확충 방안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봉안당이나 묘지의 여력이 없고, 화장시설도 보완해야 할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 검토 중임.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